

입학사정관제 운영 규정

제정 2013. 06. 25 개정 2014. 03. 31
개정 2015. 04. 0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이하“본교”라 함) 입학사정관제의 효율적인 전형 업무 추진 및 입학사정관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등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입학사정관제”라 함은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육성·채용·활용함으로써 대학의 건학 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자유로운 방법의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② “입학사정관”이라 함은 다양한 전형자료를 효과적으로 연구·개발하여 학생을 선발 및 육성하는 대입전형전문가로서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을 말한다.
- ③ “채용사정관”이라 함은 채용과정을 통해 선발한 입학사정관을 말한다.
- ④ “전환사정관”이라 함은 본교의 직원으로서 입학사정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교 직원 중 총장이 임용한 사정관을 말한다.
- ⑤ “교수사정관”이라 함은 본교의 교원으로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선임된 사정관을 말한다.
- ⑥ “위촉사정관”이라 함은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교의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총장이 위촉한 사정관을 말한다.

제2장 입학사정관

제3조(임용) 입학사정관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 ① 채용사정관은 석사학위 이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환사정관과 교수사정관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내부 위촉사정관 및 외부 위촉사정관은 입학홍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4. 7)

제3장 운영

제4조(조직)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위하여 입학사정관실을 독립적인 부서로 설치·운영하며 입학사정관실장은 입학관리실장이 겸한다.(개정 2014. 3. 31)

제5조(입학사정관 역할) 입학사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① 입학사정관전형 설계, 평가요소 및 방법 개발
- ② 자격심사·서류평가·면접고사 등 각종 심사

- ③ 입학사정관전형 위원회 참여
- ④ 전형결과 분석 및 우수학생 유치 연구
- ⑤ 입학상담·홍보·입시지원 등 기타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관한 업무

제6조(공정성 및 신뢰성) 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다수의 사정관에 의한 다단계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학사정관의 평가 시 평가자 간 일정 수준 이상 평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 한다.

③ 지원자 중 사정관의 자녀, 친인척, 법적대리인과의 친밀한 우정관계 등 공정한 입학전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 입학전형담당자는 입학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④ 유사도 검색시스템(대교협 공정성확보 시스템 유사도 검색)을 이용하여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검증함으로써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일정기준 이상의 유사도를 보인 제출서류는 입학사정관 전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제4장 위원회

제7조(입학사정관전형위원회)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전형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입학홍보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임입학사정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5. 4. 7)

③ 위원회는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제반사항
- 2.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입학사정관전형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평가
- 4. 입학사정관 전형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재심
- 5. 기타 입학사정관전형에 관한 주요사항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의 안건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 하에 선 시행 후 사후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